

## 보 건 소

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8	1	1	1		

##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

(보건소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계 획	완결여부	비고
55	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철저	○ 찻집, 찻방 등 법정전염병 53군에 대한 통계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으며, 병의원에서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계법에 의하여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나, 보고체계가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, 해당기관(병의원)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여, 향후 전염병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	○ 전염병예방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의사등의 전염병환자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○ 2007.4.23 관내의료기관 28개소에 협조공문발송. ○ 2007. 5월부터 전염병발생신고 전용휴대폰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지도·점검 시 전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. ○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발송과 지도 등으로 전염병환자 발생시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하겠으며, 보고체계가 잘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적으로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.	완결 (계속추진)	